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앞으로의 과제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한국시민사회
SDGs네트워크

협력



목차

I 프로그램	5
II 발표자료	
1. 주제별 세션 1	7
(1)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SDG1)	
사례발표: 현장의 빈곤이슈 &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2)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장려 (SDG9)	13
사례발표: 현장의 산업혁신 이슈 &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2. 주제별 세션 2	25
(1) 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여아의 자력화 (SDG5)	27
사례발표: 현장의 성평등 이슈 &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 장애인 현장이슈와 SDG	29
사례발표: 현장의 장애인 이슈	
-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3. 주제별 세션 3	37
(1)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SDG14)	39
사례발표: 현장의 해양 생태계 이슈 &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 박지현 (前 그린피스 · WWF 해양 캠페이너)	
(2)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정의,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SDG16) & 이행수단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SDG17)	51
우리나라의 평화 & 정의 & 파트너십 이슈	
- 이영아 (참여연대 간사)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 정예름 (KoFID 간사)	

프로그램

진행: 한재광(KoFID 운영위원장 / 발전대안 피다 대표)

세션	시간	내용
인사	14:00~14:10	참가자 소개
주제별 발표 : People, Prosperity [사회] 이리나 (한국장애인포럼 사무국장)	14:10~15:10 (60분)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SDG1) [발표 1 (20분)] 사례 발표: 현장의 빈곤 이슈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 목표와 지표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청중토론 (10분)]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장려 (SDG9) [발표 1 (20분)] 사례 발표: 현장의 산업혁신 이슈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청중토론 (10분)]
		청중토론
		청중토론 후 휴식
		청중토론 후 휴식
		청중토론 후 휴식
		청중토론 후 휴식
주제별 발표 : People [사회]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15:20~16:20 (60분)	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여아의 자력화 (SDG5) [발표 1 (20분)] 사례 발표: 현장의 성평등 이슈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청중토론 (10분)] 장애인 현장이슈와 SDGs [발표 1 (20분)] 사례 발표: 현장의 장애인 이슈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청중토론 (10분)]
		청중토론
		청중토론 후 휴식
		청중토론 후 휴식
		청중토론 후 휴식
		청중토론 후 휴식
주제별 발표 : Planet, Peace, Partnership [사회]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16:30~17:30 (60분)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SDG14) [발표 1 (20분)] 사례 발표: 현장의 해양 생태계 이슈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박지현 (前 그린피스 · WWF 해양 캠페이너) [청중토론 (10분)]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정의,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SDG16) & 이행수단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SDG17) [발표 1 (10분)] 우리나라의 평화 & 정의 & 파트너십 이슈 이영아 (참여연대 간사) [발표 2 (10분)]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정예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간사) [청중토론 (10분)]
		청중토론
		청중토론 후 휴식
		청중토론 후 휴식
		청중토론 후 휴식
		청중토론 후 휴식
전체토론	17:30~18:00	마무리 토론 및 단체촬영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앞으로의 과제

주제별 발표 1

People, Prosperity

사례 발표: 현장의 빈곤 및 산업혁신 이슈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1. 빈곤 현장의 이슈와 사례

-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불충분한 보장수준 등으로 인해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의 목소리를 내어 왔다.
- 201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통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시행 이래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정부가 밝힌 개정의 가장 큰 목표는 선정기준을 다층화 해 흔히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로 표현하던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수급의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는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빈곤 당사자들이 요구해온 내용과 형식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기존의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만든 선정기준은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복잡해진 서류와 절차는 수급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다. 즉, 기존의 한계를 답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을 출현시키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부양의무자기준'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이들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여야만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이들이 2010년 기준 117만 명이다. 이후 관련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당시 155만 명이던 수급자가 제도 개편 직전까지 132만 명으로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시행을 앞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해 12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개편 후 2016년 5월 전체 수급자 수가 167만 명으로 개편 전 132만 명에 비해 27%(35만명) 증가했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이는 보건복지부가 개별급여 개편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던 75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2009년 156만 9천명과 400만명이 이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숫자다. 또한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16년에만 24만 4천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했으나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표와 다소 거리가 먼 급여내용과 수준을 갖고 있어 이를 기초생활수급자 확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를 제외하면 의료급여 수급자(143만 2천)를 기준으로 볼 때 제도개편을 통해 늘어난 수급자 숫자는 11만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한 12만명의 신규진입자에도 미달하는 숫자다.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사각지대의 문제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아래는 빈곤사회연대가 거리상담을 통해 만난 이들의 사례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문제들이 이와 같이 발견되고 있다.

- 서울시 중계동에 사는 이O석씨(만57세)는 2000년부터 심한 당뇨와 고혈압, 알코올중독으로 수급을 받았다. 2013년 교통사고로 인해 장파열·다리 수술로 수술비가 크게 들었고 현재까지 목발 없이 걸을 수 없다. 2014년 큰 딸이 결혼하면서 수급에서 탈락했다. 사위와 딸 소득때문이라고 들었다. 수급이 끊겨 힘들게 지내다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속아 명의 도용 사기를 당했다. 경제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었고, 2015년 별거 중이던 아내와 정식으로 이혼, 대학에 다니는 딸 2명에 대한 친·양육권을 넘겼다. 2015년에 다시 수급 신청을 해서 의료급여와 약간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만 생계급여는 받지 못한다. 큰 딸은 결혼식 이후 얼굴 한 번 본적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동사무소에 말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음을 고민하고 있다.
- 서울시 후암동에 사는 한O옥씨(만49세)는 얼마 전 까지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서서히 허리와 다리가 아파오더니 최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병원에 가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말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진통제만 먹으며 버티고 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20여 년 전 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다. 몸도 아프고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급신청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족관계가 단절/해체되었음을 이야기해도 일단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은 간다는 말에 이렇게 사는 걸 가족들이 아는 것이 두렵고 서러워 수급신청을 포기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소득·재산기준은 계속해서 완화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 인구대비 3.2% 수준이었던 수급자 수는 2006년 3.2%, 2012년 2.7%, 2015년 2.6%까지 떨어졌고, 노인빈곤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2003년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서도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 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가 있다.
- 기초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부양의무자기준이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은 빈곤층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즉,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이 사적부양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는 근본적으로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국가가 빈곤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한국정부는 속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야 한다.

2.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 해당 목표의 세부목표 및 글로벌 지표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부목표(7개)	지표(12개)
1.1 2030년까지 현재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등 모두를 위해 모든 곳에서 극심한 빈곤을 종식	1.1.1 국제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도시/농촌)인구 비율 (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리적 위치별)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차원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	1.2.1 국가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별 및 연령별)

총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의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1.3 모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3.1 사회보호 최저선/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비율 (성별,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소외계층별)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를 가지고 토지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가지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실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전체 성인의 비율(성별, 및 보유 형태별)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개발하고, 기후와 관련된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	1.5.1 인구 100,000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5.2 국제 GDP와 비교해서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1.5.3 국가 그리고 지방수준에서 재난 위험 축소를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게 모든 차원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증진을 포함하여 상당한 양의 자원의 동원을 보장	1.a.1 정부에 의해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되는 자원의 비율 1.a.2 정부의 총 지출 중 필수 서비스 (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에 소요되는 지출 비율
1.b 빈곤종식 활동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 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성	1.b.1 여성,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문으로 지출되는 정부의 반복적인 자본의 지출 비율

- 이러한 세부목표와 지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현황은 어떠한가?

(객관적 통계 분석 근거 요망)

[참고] 세부목표 국문본 별첨

[참고] SDGs 글로벌 지표(국문) 별첨(통계청 번역본)

[참고]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해당목표 관련 한국의 현황과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해당 목표와 세부목표는 유의미한

가? 그리고, 세부 목표에 대한 지표는 적절한가?

- 국가 SDGs와 지표를 설정할 시, 글로벌 목표 및 지표 외에 수정/보완/추가되어야 할 한국 고유의 SDGs와 지표는 무엇인가?

[참고] 예시표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현 글로벌 SDGs 지표	제안 가능한 시민사회 대안지표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앞으로의 과제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혁신 장려(SDG9)**

2016. 11.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1. 현장의 산업혁신 이슈

1) 비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방식

□재정낭비를 가져오는 SOC 민간투자사업

- 한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SOC)의 확충을 위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SOC지출 중 약 20% 정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50% 이상인 무늬만 민간투자 방식임.

<표1> 한국의 사회기반시설 예산 추이

사회기반시설 예산 현황					
(단위: 조원, %)					
	'13	'14	'15	'16	'17(안)
총 지출	349.0 (7.3)	355.8 (1.9)	375.4 (5.5)	386.4 (2.9)	400.7 (3.7)
사회기반시설(SOC)	24.3 (5.2)	23.7 (-2.5)	24.8 (4.6)	23.7 (-4.4)	21.8 (-8.2)

주: ()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 예산안

- 중앙정부가 운영중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2013년말 기준 총 사업비 28조원의 46%인 13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했음
- 민자사업이 처음시작 된 1995년부터 2013년 까지 민자도로와 민자철도의 이용료로 재정사업 대비 2.9조원(추정)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낭비 및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됨

<표2> 민간투자사업(BTO+BTL) 규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BTO	4	3	3	4	2	1
BTL	5	5	1	2	2	1
합계	9	8	5	5	4	3
누적	76	84	89	94	97	100

자료 : 국가통계포털, 민간투자사업 현황

<표3>총사업비 대비 민자사업 재정지원 현황(2013년 까지)

단위 : 억원

총 사업비		28조 4,201
재정지원	계	13조 1,700(46%)
	건설비 지원	9조 5,936
	운영비 지원	3조 5,764
민자사업으로 인한 시민 추가 이용료 부담액 ¹	계	2조 8,903
	민자 도로	2조 8,464
	민자 철도	438억

자료)중앙정부 사업 기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청구, 기획재정부 토론회 자료. 사업별 지원 내역

주1)추가 이용료 부담액 : 2013년까지 민자사업자 운영수익 합계 / 재정사업대비 요금비율
민자도로 : 운영수익(3.9조) / 1.85, 민자철도 : 811억/1.85, 인천국제공항철도 및 항만 제외

주2)2013년 말 기준.

□ 이슈의 발생원인

- 민간투자사업에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MRG, 건설비 등)
- 재정사업 방식과 비교한 재정낭비
- 수요예측의 부실
- 재정사업과 비교한 비싼 요금(비효율성)
- 경쟁없는 입찰방식(민간제안)

□ 정책대안

- 민간투자사업 폐지 검토
- 경쟁 없는 민간제안 방식 폐지
- 재정지원 금지
- 투명한 정보공개

2) 연구개발지출의 세액공제 문제

□ 과도한 연구개발지출 세액공제로 인한 법인세 실효세율 저하

-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의 구성과 비중을 살펴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의 40~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연구인력개

발비 세액공제는 30.5%,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0.97%로 집계 되었다. 2012년 신고 된 법인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어 그 비중은 점차 높아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자본여력이 높은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목적을 가지고 법인세를 공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공제감면이 대기업군에 집중될 수 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보다 법인소득은 물론, 담세능력이 월등히 높은 대기업군의 실효세율을 떨어뜨려 전체 세수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단순히 공공 및 민간의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이 높다는 정량적 측정은 한국 상황에서의 산업혁신과 인프라와 관련된 목표와 지표로는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임.

<표4>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의 구성 및 비중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 총액	71,483	74,014	93,315	94,918	93,197
임시투자세액공제	27.16%	23.00%	28.60%	20.97%	10.9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1.61%	25.56%	24.77%	26.61%	30.5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11.83%	10.42%	6.46%	6.66%	6.71%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4.99%	4.86%	5.10%	2.29%	2.17%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3.60%	3.48%	4.10%	2.96%	2.43%
기 타	30.80%	32.69%	30.97%	40.51%	47.1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2014)

□ 이슈의 발생원인

- 대기업에 유리한 연구개발 지출

<표5>연도별,기업규모별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중 추이

연도별,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중

소득귀속 연도	전체 금액	대기업 금액	중소기업 금액	대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2007	1,403,720	892,733	510,987	63.6%	36.4%
2008	1,527,166	920,360	606,806	60.3%	39.7%
2009	1,544,677	919,598	625,079	59.5%	40.5%
2010	1,841,678	1,068,693	772,985	58.0%	42.0%
2011	2,311,301	1,392,025	919,276	60.2%	39.8%
2012	2,525,713	1,555,552	970,161	61.6%	38.4%
2013	2,849,380	1,932,291	917,089	67.8%	32.2%
2014	2,743,681	1,800,379	943,302	65.6%	34.4%

자료 : 박주현 의원실

● 과도한 공제율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해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일반 연구·인력개발의 경우 당해연도 지출액의 3%, 또는 직전연도에 비해 초과 지출액의 40%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은 30%, 일반 연구·인력개발 비용은 증가분의 50%까지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음.
- 공제혜택의 60% 이상이 대기업에게 귀속
-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R&D 비용의 최대 3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신성장산업 기술 사업화 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8%, 대기업 7%)세액공제 신설

● 기업의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감소

□정책대안

-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감면 축소
- 기업 R&D 지출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 법인세 인상

2.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1) <SDG 9>의 세부목표 및 글로벌 지표

목표9. 건설한 인프라 구축,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표 6> 목표 9 의 세부목표 및 글로벌 지표

세부목표(8개)	글로벌 지표(12개)
9.1 모두를 위해 적당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경제개발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 초국경적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개발	9.1.1 사계절 도로 반경 2km내 거주하는 지방 인구의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 (운송수단별)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용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증대하며, 최빈개도국의 경우 그 비율을 2배로 증대	9.2.1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산업과 기타 기업이 적당한 신용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가치사슬 및 시장에서의 통합을 증진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9.3.2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역량에 따라 조치를 취해, 자원효율성이 높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부여	9.4.1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2030년까지, 인구 백만 명 당 연구 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 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 개발 지출
	9.5.2 거주자 백만 명당 (풀타임에 준하는) 연구원 수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국들,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기반시설에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자금을 합한) 공식적인 국제적 지원 총액
9.b 산업 다변화, 상품가치를 더 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9.b.1 총 부가가치 중 중·고급 기술 산업 부가가치의 비율

9.c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늘리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이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9.c.1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기술별)
--	-------------------------------

자료 : 통계청

2) <목표 9의 글로벌 지표>와 한국의 현황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

● 국내 및 국제 여객 수송수단별 실적

<표7> 국내 및 국제 여객 수송수단별 실적 추이

구분	수단	2012	2013	2014
국내	국내 합계(인)	29,579,407,763	30,067,307,788	13,682,610,680
	철도(인)	1,149,339,828	1,224,819,764	1,263,471,741
	지하철(인)	2,410,930,535	2,476,393,758	2,526,166,677
	공로(인)	25,982,998,015	26,327,678,363	9,854,053,590
	해운(인)	14,537,867	16,062,533	14,271,134
	항공(인)	21,601,518	22,353,370	24,647,538
	국내 합계(인-키로)	429,927,322,729	438,153,371,059	196,182,324,290
	철도(인-키로)	42,492,560,873	38,531,499,552	39,499,629,439
	지하철(인-키로)	27,586,313,584	27,821,663,659	28,360,352,445
	공로(인-키로)	350,216,945,089	361,695,504,345	118,825,784,828
	해운(인-키로)	921,702,649	1,011,706,059	-
	항공(인-키로)	8,709,800,534	9,092,997,444	9,496,557,578
국제	해운(인)	2,880,672	2,737,201	2,646,020
	항공(인)	47,702,644	50,986,891	56,778,759
	해운(인-키로)	1,162,562,018	0	0
	항공(인-키로)	154,025,032,053	163,869,564,223	173,643,425,127
	국제 합계(인)	50,583,316	53,724,092	59,424,779
	국제 합계(인-키로)	155,187,594,071	163,869,564,223	173,643,425,127

자료 : 국가통계포털, 국토교통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 국내 및 국제 화물 수송수단별 실적

<표8> 국내 및 국제 화물 수송수단별 실적 추이

구분	수단	2012		2013		2014	
		수송량(톤)	지수	수송량(톤)	지수	수송량(톤)	지수
국내	합계	1,727,985,144	247	1,704,342,032	243	1,668,282,901	0
	철도	40,308,928	75	39,822,270	74	37,379,168	0
	공로	1,563,486,519	313	1,546,406,966	310	1,512,700,526	0
	해운	119,057,307	81	117,860,110	80	117,920,088	0
	항공	265,277	68	252,686	65	283,119	0
국제	합계	1,111,747,051	228	1,126,451,308	231	1,188,051,936	244
	해운	1,108,538,270	229	1,123,205,055	232	1,184,641,194	244
	항공	3,208,781	197	3,246,253	199	3,410,742	209

자료 : 국가통계포털, 국토교통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9.2.1)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 산업별 부가가치(제조업, 서비스업)

<표9>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서비스업)

단위 : 십억원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산업	388,732	570,223	830,044	871,126	941,872	996,257	1,044,566	1,145,124	1,209,956	1,251,455	1,303,238	1,354,286
서비스업	212,288	327,961	492,673	524,010	567,767	609,858	634,402	678,591	715,113	744,254	772,184	804,774
유통서비스	54,512	79,481	104,734	110,190	119,400	127,967	129,976	145,028	152,093	157,954	163,252	167,116
도·소매	37,572	54,755	69,286	73,674	79,041	85,828	89,456	100,489	109,635	114,384	116,480	116,925
운수·보관	16,939	24,727	35,449	36,516	40,359	42,139	40,520	44,539	42,459	43,571	46,772	50,190
자식서비스	77,677	120,023	203,289	218,276	238,021	255,092	266,406	284,401	302,293	311,485	320,290	335,932
방 송	1,243	1,943	2,940	3,173	3,347	3,391	3,665	3,927	4,218	4,337	4,451	4,423
통 신	6,929	12,363	19,128	18,352	17,760	17,049	16,674	16,388	15,697	15,906	16,394	16,703
정 보	270	653	1,748	2,010	2,278	2,374	2,760	3,284	3,472	3,590	3,720	3,931
출 판	4,547	10,525	15,613	17,271	18,576	19,550	20,890	21,765	23,440	24,942	26,024	27,021
금융·보험	23,081	32,320	53,820	55,741	61,891	64,928	65,352	71,670	77,873	75,809	72,478	75,558
전문·과학기술	13,193	18,383	33,031	37,220	41,572	46,817	49,620	54,169	58,350	62,527	66,988	70,736
교 육	18,114	27,071	45,768	50,064	54,303	59,746	61,915	63,749	66,560	68,546	71,599	74,294
의료·보건	6,772	11,907	22,894	25,444	28,196	30,430	34,169	37,548	40,038	42,671	44,903	49,017
예술·스포츠·여가	3,529	4,859	8,348	9,001	10,098	10,807	11,362	11,901	12,645	13,158	13,733	14,248
사회서비스	29,365	47,968	76,932	81,999	89,034	97,666	103,203	109,044	114,836	122,316	129,495	135,504
사업지원	4,743	10,654	16,376	17,363	19,201	20,940	20,568	23,781	24,927	26,301	27,771	29,063
공공행정	23,185	35,062	56,719	60,466	64,730	71,209	76,178	78,886	83,291	88,655	93,776	98,280
사회복지	1,457	2,252	3,837	4,171	5,103	5,517	6,457	6,377	6,618	7,360	7,948	8,161
개인서비스	50,694	80,489	107,718	113,545	121,313	129,133	134,817	140,118	145,891	152,499	159,146	166,223
숙박·음식점	11,079	17,094	21,884	23,554	25,441	27,486	28,685	29,862	31,071	32,424	33,772	35,193
부 동 산	30,081	52,467	70,897	73,781	78,236	82,268	85,989	88,395	91,751	95,926	100,073	104,236
임 대	2,486	1,073	1,488	1,719	1,974	2,312	2,219	2,647	2,965	2,997	3,454	3,768
기타 서비스	7,048	9,855	13,449	14,492	15,662	17,067	17,924	19,214	20,104	21,151	21,847	23,026

자료 :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2015. 12),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10>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제조업)

단위 : 십억원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산업	388,732	570,223	830,044	871,126	941,872	996,257	1,044,566	1,145,124	1,209,956	1,251,455	1,303,238	1,354,286
제조업	108,164	165,229	234,637	242,232	265,627	284,939	300,037	361,771	379,521	388,010	403,857	410,214
자본재	27,402	42,672	62,478	68,941	76,798	82,816	87,913	104,360	112,368	116,877	120,475	123,064
자동차	9,811	13,499	20,940	22,362	25,350	24,726	26,083	32,824	37,529	38,925	41,509	43,390
조선	3,755	7,066	9,039	11,011	14,212	18,159	19,301	21,299	20,678	21,431	19,852	20,441
철도	217	153	611	616	654	870	1,074	963	702	698	668	626
항공	312	527	588	733	750	975	982	1,035	937	998	1,311	1,227
기타수송장비	228	364	228	223	316	404	470	330	524	441	303	283
일반목적기계	5,247	7,543	9,874	10,393	12,007	13,242	14,063	14,633	15,892	16,911	17,029	16,638
특수목적기계	3,723	5,806	9,080	9,632	9,854	10,645	10,406	14,338	15,861	16,223	17,397	18,215
정밀기기	1,815	2,290	4,362	5,388	6,654	4,568	4,836	5,944	6,637	7,036	7,210	7,149
전기기기	2,294	5,423	7,638	8,535	9,000	9,227	10,698	12,885	13,629	14,214	15,197	15,095
소비재	14,955	19,306	24,916	25,925	26,907	28,449	31,310	33,103	35,059	36,052	37,751	38,781
음식료	6,607	9,083	11,108	11,116	11,584	12,088	12,952	13,554	14,429	14,529	15,767	16,013
담배	218	926	1,199	1,270	1,300	1,546	1,530	1,377	1,379	1,571	1,467	1,597
의류	3,357	3,576	5,144	5,821	6,027	6,869	8,195	8,739	9,497	10,048	10,055	10,505
가족·신발	1,032	1,189	1,205	1,169	1,158	1,170	1,264	1,654	1,732	1,904	2,209	2,022
인쇄	1,561	1,523	2,511	2,474	2,465	2,573	2,659	2,720	2,705	2,628	2,546	2,695
가구	1,080	1,524	2,376	2,743	2,906	2,859	3,156	3,215	3,370	3,315	3,579	3,730
기타제조업	1,100	1,485	1,373	1,332	1,468	1,344	1,553	1,843	1,958	2,057	2,128	2,218
IT제품	8,146	18,411	22,745	22,398	23,165	24,134	24,052	24,026	23,549	25,322	28,276	28,094
가전	5,261	6,089	9,102	9,147	7,658	7,045	7,375	8,918	7,288	7,435	8,496	8,603
통신기기	1,149	5,081	10,947	10,637	12,790	14,665	14,228	12,144	13,343	14,773	16,218	16,471
컴퓨터	1,735	7,241	2,696	2,614	2,716	2,424	2,449	2,965	2,917	3,114	3,561	3,021
IT부품	9,949	17,387	28,302	29,926	33,479	38,574	42,615	55,545	60,914	61,039	64,645	65,031
반도체	6,795	8,961	11,870	11,708	13,575	13,726	17,227	22,974	22,030	24,443	25,636	25,775
디스플레이	1,266	4,136	11,423	13,397	14,964	18,274	18,655	24,150	29,299	26,268	27,059	28,184
전자	128	448	525	493	554	2,135	2,097	2,695	3,525	4,054	4,177	4,149
기타전자부품	1,759	3,842	4,483	4,329	4,386	4,438	4,636	5,726	6,059	6,274	7,773	6,923
중간재	47,713	67,454	96,256	95,101	103,279	110,966	114,147	134,836	147,602	148,720	152,509	155,244
철강	7,772	9,880	17,606	16,223	17,810	21,591	19,368	25,134	27,268	25,295	25,074	25,923
비철금속	1,819	2,404	3,187	3,849	4,663	3,882	4,332	5,351	6,316	5,912	5,793	5,508
주조	486	586	870	862	1,528	1,621	1,035	1,262	1,416	1,380	1,271	1,231
조립금속	5,702	9,103	16,318	17,230	19,015	19,875	21,321	24,459	26,721	29,007	29,538	30,702
석유화학	4,288	5,615	10,465	9,884	11,437	11,930	13,480	17,610	19,753	18,612	18,289	17,816
정밀화학	3,504	5,930	5,862	6,037	6,184	7,191	7,641	7,605	8,319	8,786	9,283	10,036
의약	2,028	2,559	3,520	3,640	3,912	4,248	4,546	5,020	5,178	5,347	5,697	5,620
섬유	6,336	9,180	6,435	5,748	5,561	6,459	6,925	7,613	8,739	9,501	9,764	10,060
고무	1,170	1,806	2,476	2,443	2,711	2,783	3,007	3,640	3,877	4,150	4,413	4,409
플라스틱	3,116	4,417	9,063	9,205	9,864	9,561	9,766	11,623	12,086	12,861	14,164	15,076
석유정제	2,137	4,053	6,877	6,472	6,839	6,731	5,304	7,499	10,105	9,752	10,195	9,222
제지	3,010	4,297	4,193	4,184	4,241	4,509	5,298	5,431	5,607	6,238	6,506	6,247
목재	916	1,041	1,298	1,325	1,364	1,359	1,541	1,573	1,665	1,472	1,700	1,746
세라믹	885	787	635	688	702	677	646	739	751	787	842	873
시멘트	2,983	3,259	3,945	3,817	3,755	4,054	3,968	3,742	3,744	4,162	4,768	4,946
유리	1,048	1,854	2,762	2,772	3,024	3,761	5,180	5,651	5,193	4,478	4,175	4,763
기타비금속광물	513	673	683	652	668	724	788	882	863	981	1,038	1,076

자료 :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2015. 12),한국은행,국민계정

□(9.3.2)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비율

● 국내은행의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여신 비율

<표11> 국내은행의 기업여신 비중

단위 : %

은행권별			기업규모별			업종별	
시중	지방	특수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44.4	8.4	47.2	40.8	58.9	기타운송장비	6.7	
					기계	4.7	
					자동차	3.9	
					기타	28.5	
					부동산 · 임대		12.9
					도소매		11.5
					건설		5.2
					기타		26.6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6.6), 2016년 1분기

□(9.5.1) GDP 대비 연구개발지출

-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표12>GDP대비 R&D지출비중 추이

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대비총 R&D 지출(%)	3	3.1	3.3	3.5	3.7	4	4.2	4.3

자료 : 국가통계포털 「연구개발활동조사」

□(9.5.2) 거주자 백만 명당(풀타임에 준하는)연구원 수

- 연구개발관계 종사자수 및 인구만명당 연구원수

<표13>연구개발관계 종사자수 및 인구만명당 연구원수 현황(2014)

주체별	2014							
	연구개발활동 수행기관수 (개)	연구개발관계 종사자수(A) (명)	연구원(B) (명)	-상근(C) (명)	인구(D) (만명)	A/D (만명)	B/D (만명)	C/D (만명)
소계	30,111	605,604	437,447	345,463	5,042.4	120.1	86.8	68.5
공공연구 기관	371	187,087	99,317	41,938	-	-	-	-
대학	29,392	366,668	304,808	274,638	-	-	-	-
기업체	348	51,849	33,322	28,888	-	-	-	-

자료 : 국가통계포털 「연구개발활동조사」

□(9.a.1) 기반시설에 지원되는(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자금을 합한 공식적인 국제적 지원 총액

● ODA분야별 지원 현황

<표14>ODA 분야별 지원

단위 : 백만불, %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933.24 (100.0%)	1,034.26 (100.0%)	1,232.19 (100.0%)	1,375.01 (100.0%)	1,476.92 (100.0%)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408.33 (43.8%)	436.26 (42.2%)	582.45 (47.3%)	626.07 (45.5%)	679.58 (46.0%)
교육	150.12 (16.1%)	183.38 (17.7%)	210.14 (17.1%)	215.85 (15.7%)	227.43 (15.4%)
보건	136.22 (14.6%)	98.84 (9.6%)	127.79 (10.4%)	145.88 (10.6%)	151.56 (10.3%)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4.76 (0.5%)	4.22 (0.4%)	7.34 (0.6%)	9.64 (0.7%)	17.92 (1.2%)
수자원 및 위생	56.97 (6.1%)	77.87 (7.5%)	126.44 (10.3%)	106.31 (7.7%)	154.85 (10.5%)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49.31 (5.3%)	53.81 (5.2%)	92.53 (7.5%)	114.00 (8.3%)	92.45 (6.3%)
기타 사회 인프라	10.94 (1.2%)	18.14 (1.8%)	18.22 (1.5%)	34.38 (2.5%)	35.36 (2.4%)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269.30 (28.9%)	331.10 (32.0%)	332.03 (26.9%)	414.86 (30.2%)	389.43 (26.4%)
교통 및 물류	127.81 (13.7%)	241.78 (23.4%)	222.35 (18.0%)	256.34 (18.6%)	236.08 (16.0%)
통신	67.36 (7.2%)	45.12 (4.4%)	52.33 (4.2%)	45.49 (3.3%)	47.64 (3.2%)
에너지	69.68 (7.5%)	40.76 (3.9%)	54.24 (4.4%)	108.38 (7.9%)	100.25 (6.8%)
금융 및 재무서비스	2.04 (0.2%)	1.54 (0.1%)	1.46 (0.1%)	1.41 (0.1%)	2.70 (0.2%)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2.42 (0.3%)	1.90 (0.2%)	1.65 (0.1%)	3.23 (0.2%)	2.77 (0.2%)
생산 (산업) 부문	65.66 (7.0%)	78.54 (7.6%)	97.46 (7.9%)	128.94 (9.4%)	145.12 (9.8%)
환경보호	14.42 (1.5%)	17.43 (1.7%)	42.83 (3.5%)	27.64 (2.0%)	13.81 (0.9%)
다부문	104.63 (11.2%)	56.00 (5.4%)	73.39 (6.0%)	44.61 (3.2%)	57.58 (3.9%)
물자지원/일반프로그램원조	- (0.0%)	1.90 (0.2%)	1.98 (0.2%)	0.02 (0.0%)	1.06 (0.1%)
부채 관련 지원	2.36 (0.3%)	- (0.0%)	- (0.0%)	- (0.0%)	- (0.0%)
인도적 지원	17.88 (1.9%)	24.12 (2.3%)	16.64 (1.4%)	26.84 (2.0%)	72.92 (4.9%)
행정비용	38.39 (4.1%)	53.60 (5.2%)	59.40 (4.8%)	57.19 (4.2%)	56.65 (3.8%)

기타(미배분포함)	12.26 (1.3%)	35.29 (3.4%)	26.00 (2.1%)	48.86 (3.6%)	60.77 (4.1%)
-----------	-----------------	-----------------	-----------------	-----------------	-----------------

자료 : 수출입은행

2)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SDG 9>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미와 적절성

□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는 세부목표와 지표

- 정량적 목표와 지표로 구성되어 양적 인프라 확충에 치중하는 한국에서는 큰 의미가 없음
- 한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SOC)의 효율성과 질적수준은 떨어짐
-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양적 목표와 지표들은 개발도상국에 부합하는 지표들로 건설산업을 통해 SOC 확충의 극대화를 이룬 한국적 상황에는 맞지 않음

□ 다만 최빈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의 지표는 의미가 있음.

□ <목표9>의 세부목표와 지표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목표로 적절한지 의문

3) 한국 상황에 맞는 <SDG 9>의 세부목표와 지표 추가, 보완

▶(세부목표 9.1 지표 추가) :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성, 재정낭비, 질적수준

- ✓ 정부지출 중 사회기반시설 투자비용,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비율
- ✓ 정부지출 중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 (세부목표 9.2지표추가 및 보완) : 재벌의 경제력집중, 제조업 외 산업전반 비중 반영

- ✓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 +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이하의 매출액

▶ (세부목표 9.5 지표 추가) : 세액공제 지표

- ✓ 전체 세수 대비 R&D 세액공제 비율 (한국의 경우 R&D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액공제를 위한 민간기업들의 지출 성향이 있음)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앞으로의 과제

주제별 발표 2

People

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여아의 자력화 (SDG5)

사례발표: 현장의 성평등 이슈 &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illegible]

장애포괄적 지속가능한 개발 Disability Inclusive SDGs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Korean Disability Forum**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4 QUALITY EDUCATION 	4.5. 장애인 등 모든 수준에서 교육, 직업훈련 접근성 보장 4.7.a. 아동, 장애 등을 배려한 교육시설 건축과 포용적, 효과적 학습환경제공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8.5. 청년과 장애인 등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달성
10 REDUCED INEQUALITIES 	10.2 장애, 인종 등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증진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1.2. 접근 용이한 교통시스템, 특히,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을 특별히 고려한 대중교통확대와 도로안전향상 11.7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공공 녹지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17.18. 2020년까지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세분화된(소득, 젠더, 장애여부 등)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지원

SDGs 속의 장애인

SDGs는 전체 17개 목표 및 169개의 세부 목표, 23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장애관련 목표는 7개의 세부 목표에 국한됨. 그러나 SDGs 목표 중 '통합적(inclusive)', '취약계층(vulnerable)'으로 언급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한 장애포괄적 개발 이행 요구 필요.

SDGs의 모든 관련된 목표를 장애인의 견지에서 목표를 수립하여 해당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함과 아울러 CRPD 모니터링 시 부재했던 장애관련 데이터에 대하여 관계 부처의 장애관련 데이터 및 정보 제공 요구 필요.

SDGs 국내 지표개발 및 정보 수집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8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2009)

한국정부가 비준한 5대 인권 조약은 정기적인 보고서를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작성함. 조약별 소관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관련 지표 및 정기적 모니터링 결과 및 보고서의 내용 참조 필요

국내 장애계 이슈 / 부양의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실업, 질병, 노령,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개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이다.
- 그러나 현행 기초법은 이와 같은 취지와 달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 즉, 수급권자의 자격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양의무제

- 다시 말해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이 나(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와 같이 가족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 더구나 기초법에서의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국내 장애계 이슈 / 장애등급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1987년 '장애인등록제도' 시범 실시

1988년 '장애인등록제도' 전국적으로 시행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장애등급제 제도화

1998년 '장애등급판정지침'으로 기준 강화

2007년 '장애등급심사' 도입과 국민연금공단 운영위탁

2010년 현재까지 '장애등급심사' 제도가 확대 시행 중

장애등급제

- 장애등급제는 1980년대부터 각종 장애인 복지제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왔는데,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
- 장애인들에게 등급을 매겨 서비스를 제한
- '장애등급심사'제도를 시행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이전 1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더 낮은 등급을 적용하면서 복지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이러한 현상의 결과가 최근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장애인들 발생
- 전형적인 예산논리가 지배하는 제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 한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

● **적정한 생활수준과 및 사회적 보호(제28조)**

53. 본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일정 수준의 수입 또는 재산을 가진 가족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대해 최저한도의 생계지원 혜택을 배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더욱이 최저생계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존의 장애등급 판정시스템에 입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적정한 생활수준과 및 사회적 보호

54.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때 기존의 장애등급 판정시스템과 해당 장애인 가족의 수입 및 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대신, 장애인들의 개인적 특성, 상황, 필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 한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

● 일반 원칙 및 의무(제1조~4조)

6. 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모델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7.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고, 이를 본 협약에서 옹호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과 조화시킬 것을 권고한다.

일반 원칙 및 의무(제1조~4조)

8. 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새로운 장애등급판정제도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시 의학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감안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장애등급판정제도에서 이와 같이 판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일반 원칙 및 의무(제1조~4조)

9.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 심사 및 등급판정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장애인들의 특성과 환경, 요구 등을 반영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또한 복지서비스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따라 확대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
- 10.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앞으로의 과제

주제별 발표 3

Planet, Peace, Partnership

바다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박지현(sophile@gmail.com)

“전 세계 인구 중 약 30억 정도는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물고기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약 12%는 아직도 직접 어업이나 양식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Living Blue Planet Report, WWF, 2015)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바다의 건강은 생존과 직결된다. 복잡한 해양 생태계 보전을 말하기 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라도 바다는 지켜져야 한다.”

1.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SDG 14 해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7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025년까지 해양오염 예방 및 감소, 2) 2020년까지 해양생태계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호, 3)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4) 2020년까지 효율적 어업 규제, 남획 및 IUU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파괴적 어업 방지, 과학기반 관리 이행, 5) 2020년까지 연안 및 해양의 10%를 보호구역으로 보전 6)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 불법어업을 유발하는 어업 보조금 금지 및 철폐, 이를 WTO 협상과 연계 7) 2030년까지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도서국가 및 최빈국 혜택증대, 또 그 외 부차적으로 1) 개도국에 해양 과학 및 산업 관련 기술 이전, 2) 소규모 어업인들의 자원과 시장 접근 확대 3)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비준과 이행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과 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SDG 세부 목표	글로벌 지표	우리나라 현황 및 문제
2025년까지 해양오염 예방 및 감소(특히 육상 발원)	부영양화와 해양 쓰레기 지수	양식장 및 어업, 일상 생활의 해양 쓰레기는 연간 약 18만 톤(해양환경관리공단 추정 연구 2014), 연안 오염도(COD)는 평균 1~1.3
2020년까지 해양생태계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호(회복력)	생태계 기반 접근법으로 관리되는 EEZ의 면적 비율	현재 EEZ 내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1.2%에 불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절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 무분별한 국가 사업 난립(제주 강정 해군기지 등)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대표성을 띤 표본 해역들에서 측정된 산성도	해양산성화에 대한 초기 연구 시작 및 산성도 측정을 위한 연구(산호를 통한 측정)
2020년까지 효과적 어업규제, 남획 및 불법어업 (IUU fishing), 파괴적 어업 방지, 과학기반 관리 이행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범위 내의 수산자원량	원양어업의 국제적 불법어업 스캔들 이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원양어선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 그러나 연안 어업에 대해서는 아직 요원(아래 글 참조)
2020년까지 연안 및 해양의 10%를 보호구역으로 보전	해양보호구역 비율	현재 EEZ 내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1.2%에 불과, 지정 면적도 작지만 지정 후 효과적 실질적 보전이 미약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 불법어업을 유발하는 어업 보조금 금지 및 철폐, 이를 WTO 협상과 연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법규를 어느 정도나 실행했는가 여부	아래 어업 관련 글 참조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도서국가 및 최빈국 혜택증대	각국에서 GDP 지수에 지속가능어업이 고려되는 지 여부	개도국에 대한 수산 ODA는 여전히 국익과 업체 이익 위주로 편성

2. 우리나라어업현황과문제 (2014 년 WWF-Korea 한국수산기초조사보고서, 박지현))

우리나라의 2013년 기준 총 어업생산량은 약 3,135,250 MT로 생산금액은 7조2,273억 원(64.6억 달러)을 기록했다. 생산량은 연평균 3백만MT 이상이며 생산금액은 매년 변동이 있다. 2013년 총 수산물 생산량 중 천해양식어업은 약 48.3%(1,515,200 MT), 연근해어업은 33.3%(1,044,700 MT), 원양어업은 17.5%(550,000 MT)의 비중을 차지했다. 생산금액 면 비중은 연근해어업이 51.8%, 천해양식어업이 24%, 원양어업이 19.4%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총 어선척수는 1990년대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13년 말 기준 71,287척까지 하락했다. 연근해어선은 총 어선척수의 66.6%를 차지했으며 원양어선은 0.4%의 비중으로 조업척수는 315척이었다.

국내 수산업은 국민계정 기준 국내총생산(GDP) 및 국내총부가가치(GVA) 비중이 각각 약 0.2%, 0.3%에 불과해 다른 경제활동에 비해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어가 및 어가인구수 또한 1990년대 이후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 수산자원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어가인구는 2013년 147,330명을 기록했다.

연근해어업에는 구획어업을 포함한 33개의 업종이 있다. 그 중 주요 어업으로는 트롤, 선망, 자망, 채낚기, 안강망 및 통발을 들 수 있다. **어구·어법에 관계없이 어업 대부분이 어장 및 대상어종이 중복된다. 예를 들어, 멸치, 고등어, 갈치는 그 어법이 각각 22개, 25개, 24개로 다양하다. 이로 인해 남획 문제가 발생하고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 어획량 기준 멸치, 오징어, 고등어, 갈치 및 꽃게가 주요 어종이다.

한국은 1957년 인도양에서 참치연승 시험어업으로 원양어업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해역으로 조업을 확대해왔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전 세계 대양에서 185개의 업체의 800척 이상의 어선이 조업했다. 그러나 이후 공해 및 연안국의 규제 강화, 높은 조업비용 및 전 세계 자유무역 확대로 원양어업규모는 2013년 기준 어선 342척, 75개 기업으로 축소되었다. 원양어업은 참치선망, 참치연승, 트롤, 채낚기, 콩치붕수망, 통발 및 저연승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어획종으로는 참치가 전체 어획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오징어(18.2%), 명태(4.4%), 콩치(2.5%)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참치는 어획량 및 어획능력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어종이다. 참치연승어업 및 참치선망어업의 연간 생산량은 각각 30,000~40,000 MT, 250,000 ~ 300,000 MT에 이른다.

한국의 원양어선은 남극해 등 모든 대양에서 활동 중이며 전세계 23개국 25개항에서 조업하고 있다. 참치는 대부분 태평양 중부 및 서부에서 어획되고 있으나 인도양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하락했으며 현재 추정량은 1950년대의 57% 수준이다. 이와 같은 자원 감소의 주 원인으로는 과잉어획능력 및 생산위주의 수산정책으로 인한 만성적 남획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인공어초사업, 바다목장사업, 어선 감축, TAC 및 수산자원회복 프로젝트 등 수산자원 감소세를 늦추기 위한 자원관리계획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획과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어업(IUU어업)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정부주도의 자원관리 프로그램과 자원 회복노력을 저해했다.

2013-2014 년 동해·서해 어업관리단에서 조사한 국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를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1,292 건의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그 중 1,110 건은 10GT(용적톤)미만의 소형 연안어선에 의한 것이었고 182 건은 10GT 를 초과하는 근해 어선에 의한 것이었다. **불법어업활동의 14%가 대부분 대형 수산기업 소유인 근해 어선이 주범이었다.** 주목할 점은 50%가 넘는 불법어업활동이 트롤어업(외끌이 기선저인망, 쌍끌이저인망, 서남해구 쌍끌이저인망, 근해 대형기선저인망, 동해구저인망)이었다. 그 외 근해 오징어채낚기어업이 불법어업 단속의 약 28%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업관계자들과의 현장인터뷰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이 우리나라 연근해 불법어업의 주범으로 중대형 트롤어업과 대형선망어업을 꼽았다. 흥미로운 점은 2013-2014년에는 대형선망어업의 불법어업활동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어선 감척사업은 어업구조조정사업의 핵심으로 1994년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0년 초다. 이는 당시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2013년까지 1조 5,890억 원을 투입하여 어선척수를 18,560척 감척했다. 대규모 감척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연근해어업의 어획능력은 여전히 적정수준을 11~13% 초과한다고 지적한다.

원양산업발전법은 한국의 원양어업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2007년 공포되었다. 그러나 한국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2013년 EU 및 미국은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등 국제적 압력이 거세졌다. 결국 정부는 원양어업의 감시감독통제(MCS)를 강화하기 위해 동법을 2013-2014년 두 차례 개정했다. 처벌 강화와 함께 부산에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면세유, 가격보조, 폐업지원금을 들 수 있으며, 천해양식을 포함한 모든 어업부문의 선박 현대화 및 인프라투자 등 다양한 간접지원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의 원양산업은 EU 어업국 또는 미국에 비해 보조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원양산업의 지원 프로그램은 저금리 용자와 면세유 지원이 대부분이다.

결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근해어업에 남획과 불법어업이 만연함에 따라 TAC 등 모든 개선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보호 등 어업의 지속가능성 및 수산자원량 회복이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 수산시장과 해외 무역에서 이력추적이 어려운 것도 큰 문제이다. 연근해 수산물의 16%, 천해양식 수산물의 35%, 원양 수산물의 90%가 비계통유통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남획과 불법어업이라는 두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 수산물을 지속가능성 및 생태계 중심으로 관리하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유통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근 원양참치 어획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참치산업이 지속가능한 어업관행을 채택하고 해외 조업에 관한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화, 정의, 파트너십 이슈

2016.11.11.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국제연대위원회 간사)

2015년 UN에서 최종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에 평화 이슈가 포함된 것처럼 SDGs 수립과정에서 평화와 안보를 담보하지 않은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개도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발전 전제조건으로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임.

1. SDGs와 평화

1) SDGs 16은 무엇을 말하는가

- 폭력종식, 법치실현, 무기 유출입 감축, 거버넌스 강화, 비차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Goal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히 감축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3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유출입을 상당히 감축하고, 도난자산 회수 및 반환을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방지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히 감축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

16.7 모든 수준에서 공명(共鳴)하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16.8 개도국의 국제 거버넌스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9 2030년까지 출생신고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 부여

16.10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근본적 자유를 보호

16.a 모든 수준에서, 특히 개도국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테러리즘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도록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관련 국내 기관을 강화

16.b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비차별적 법과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 SDGs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 그러나 SDGs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음. 여전히 SDGs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SDGs 16번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음.

○ SDGs 16의 한계

- 정부군이 개입된 내분의 해결 고리 모호함. 정부군이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분쟁해결이란 명목의 폭력이 가능함.
- 시리아 공습,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이라크/아프간전쟁, 한국전쟁 등 국경을 넘는 전쟁은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군사비는 중요한 개발재원의 일부이지만, 사실상 SDGs논의에서 배제되었으며 군사비 삭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또한 16번에서 말하는 평화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음.
- 무기 산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음. 무기상들이 분쟁 촉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지적되지 않았으며 불법적 무기거래(illicit arms flows)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합법적이나 문제 있는 무기거래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음.
- 안보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 더 강조될 필요 있음. 법치, 투명성, 자유를 언급하지만 국방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안보관련 기구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는 강조되지 않음

○ 계속되고 있는 전쟁

-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은 다름. 이라크와 아프간을 비롯하여 시리아, 나이지리아 등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전쟁은 현재 진행 중임.
-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역시 종전이 아닌 정전인 상태.

2) 분단국가, 한반도. 끝나지 않은 전쟁

○ 분쟁지역, 한반도

- 1953년 이후 정전체제가 공고화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은 무감각해져 있으나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임.
- DMZ 목함 지뢰 폭발
-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 접경지역 남북 간 포격전
- 북한 4차 핵실험
- 개성공단 폐쇄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한반도 전개
-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
- 한미 연합 군사훈련
- 북한 5차 핵실험

▲ 사실상 2016년, 지금 이순간에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

○ 지금, 한반도의 모습

- 군사주의의 심화와 진영화
- 전쟁 같은 일상
-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와 성역화된 안보기구들
- 지식사회/언론의 논쟁 부족
- 민주주의의 후퇴

○ 현실주의(군사주의)의 비현실성, 우리가 빠진 안보딜레마

-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도되었지만 실패해온 군사주의적 접근들
- 미국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를 종식시켰나
-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은 정말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한 적이 있나
- 핵 보유국과 핵우산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전 세계 핵비확산 노력은 성공하고 있나
- 북핵갈등 20년, 제재와 봉쇄는 성공했나
- 국방비로 약39조원(2016) 가량을 쏟아 부어 우리의 삶은 나아졌나
-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수입 2014년 세계1위/ 복지비 지출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 모두가 '국가안보'를 말하지만 결국 아무도 안전해지지 않는 딜레마. 남는 것은 군비경쟁의 악순환뿐

○ Give Peace a chance 평화에게 기회를

- 안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강요되어온 정책수단들 대신
-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 공포와 불신 대신 이해와 협력의 비전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3) 평화국가 상상하기

- 구조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
- 안전한 세계 혹은 사회를 위한 규범
- 비군사적 해법과 분쟁갈등 예방제도의 확충 지향

- 조기경보, 예방, 치유를 보장할 민주적 장치 마련
- 협력안보, 공동안보 지향
- 비공격적 방어 논리기술 발전
- 적정군비, 군사기술과 국방 산업의 윤리성에 대한 민주적 검증 시스템 마련

○ 어떻게?

- 국가와 안보전문가들의 ‘위협해석독점’에 도전하고 안보영역을 민주화
- 국방/안보권력에 대한 시민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
- 평화패러다임 마련, 새로운 인식과 실천의 공동체 형성

cf. 안보패러다임 vs 평화패러다임

	안보패러다임(군사화)	평화패러다임(탈군사화)
적 or 위협	민족인종종교이념적 타자	배타패권우월근본주의
방위 대상	국가, 국경, 민족	인간, 지역(R)-소지역(L) 공동체, 시민사회
추구 가치(이익)	국익, 자원시장의 독점, 성장, 효율	인권, 지속가능성, 공동번영, 경제정의, 복지
행위자	남성, 안보 관료와 군인	양성(여성참여 확대), 공동체 구성원
위협해석, 판단	국가, 정부기구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시민사회조직의 참여
평화유지전략	힘(공포)의 균형과 군사동맹	상호의존(공동안보), 다자협력
평화유지수단	군비(소극적 평화)	예방과 치유, 협력과 지원
정당화 통합수단	힘의 우위, 공포, 국가주의, 공리주의, 배타적 정체성	과정의 정의, 관용, 시민불복종, 평화적 생존권, 다중 정체성
적정 군비	절대억지, 절대방위	합리적 충분(비공격적 방어)
군사 윤리	과학기술의 군사화, 군수산업, 대량살상무기, 예외주의	과학기술(군비)의 윤리성 무기수출 제한, 핵실험 반대
정보접근	비밀주의, 정보통제	비밀최소화, 조기경보

4) 평화국가 만들기

① 한반도/ 동북아 시민평화 구상

-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대응
-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시위 반대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여
-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운동

② 군비 감시와 군축운동

○ 국방예산 삭감과 군구조 개혁

- 군복무기간단축(양심적병역거부 보장 포함) 정책제안
- 평화군축박람회
- 세계군축행동의날 연례 캠페인

○ 무기구입, 개발 모니터링

- 무기전시회 ADEX 대응활동
- MD반대

○ 주한미군과 군사기지

- 방위비분담금 모니터링
-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운동
- 탄저군 국내반입 및 실험 대응
- 사드한국배치저지활동

○ 해외 무장개입 반대

③ 시민평화주체 형성

- 시민평화교육과 평화활동가 형성

2 SDGs와 글로벌파트너십

1) SDGs 17번

17.2 총국민소득의 0.7%를 공적개발원조로(ODA/GNI) 개도국에, ODA/GNI의 0.15~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많은 선진국의 약속을 포함하여 선진국은 공적개발원조 약속을 완전 이행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강화

- ODA 규모를 늘리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2) 거꾸로 가는 한국 개발협력 정책

○ 최악의 ODA 코리아에이드

- 국제개발협력 기본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문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Leave no one behind)’이라며 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
-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일 뿐 아니라 개발효과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저버린 사업.

○ 새마을운동 ODA

- 새마을 ODA가 해당 국가의 빈곤퇴치와 사회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된 검증도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집착하고 있는 정부.
- 1970년대식 새마을운동을 그대로 답습
- 정신적인 측면의 주민의식 개혁 강조
- 경쟁과 인센티브, 성과중심의 개발
- 한국 개발독재 시절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 정신개조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SDGs 이행을 위한 주요이니셔티브라고 홍보하고 있음.

○ 원조의 군사화

- 국제사회는 2016년 2월 OECD DAC 각료급회의(HLM)을 통해 ODA현대화의 기본방향을 확정하였음. 논쟁이 있었던 평화·안보 관련 ODA측정 통계 지침을 개정하여 ODA 인정활동 범주에 평화, 안보 부분을 포함하였음.
- 군 장비 동원, 수원국 군인력 훈련, 경찰 훈련 및 일상적 치안활동 지원,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활동 등 ODA 범주로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함.
- 군사비로 ODA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빈곤퇴치 및 개도국 사회개발을 위한 ODA 기본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빈곤퇴치를 위해 사용되는 ODA가 줄어 들 수 있음.

○ 한국의 원조의 군사화

① 한국의 아프간 PRT(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

- 2010년 7월 ~ 2014년 6월말까지 총 4년간 2,500여명 인력 투입
- PRT 시작 전인 2009년부터 이미 아프가니스탄은 한국 정부의 ODA예산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국가였음.
- 아프간 PRT는 직접적인 점령정책보다는 현지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일종의 유화정책으로 고안해낸 것으로 국제정치 차원에서 계산되고 결정된 지원 사업이었음. 제대로 된 개발전략이나 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했음.
-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난 후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② 재난구호에서의 군대 파견

- 2013년 12월 필리핀에 1년간 아라우 부대를 파병함.
- 인도적 목적의 긴급구호라는 명분이 있었으나 파병 결정에 외교, 군사적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파병 활동의 내용은 공공시설 복구 및 피해지역 정리, 의료지원과 방역활동, 직업학교, 한국어교실 운영, 무료급식, 영화 상영 등이었으며 이중 일부는 민간 NGO 단체를 통해 실시.

③ 치안한류

- 2014.10 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도국 치안분야 무상협력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 코이카는 지난 2005년부터 경찰청과 63개의 국내 초청연수사업을 진행하였고, 개도국에 수사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치안 시스템을 전수하고 있음.
- 치안 한류' 라는 명목으로 제공되는 치안 기법 및 시스템을 전수 받은 수원국의 경찰력이 자국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려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 기법 전수가 교육의 주요 내용이며 속칭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와 여경 바리케이드 등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밝히고 있음.
- 한국 기업은 오만에 2013~2014년 약 2년간 살수차 57대와 시위진압용 경찰방패 등 약 7천만 달러의 장비를 수출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도 2010년 1600만 달러 가량의 물대포차를 수출했음. 한국이 전수하는 경찰의 진압 기술과 전략이 한국산 집회 진압장비를 만나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음.

3) 제언

○ 통합·조정 기능을 하는 기구 작동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음. 실질적 협의와 조정 보다는 형식적 절차로 작동하는 경우가 더 많음.
- 국개위의 통합조정 기능을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정보공개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보장

- 시민사회, 학계,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제도 마련
- 국제개발협력정책 기본계획 및 개발협력 이니셔티브, 개발협력 구상 등 개발협력 정책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및 전문가, 시민사회 의견을 받는 절차 마련.

○ 이행과 평가를 포함한 사업 계획 마련 제도화

- 협력기관과의 협의과정과 이행 및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과정을 사전에 정교하게 계획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및 절차 명확화하고 이를 공식화 하는 것이 필요 ♣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 SDG 16, 17

2016.11.11
정예름 (KoFID)



목차

- **SDG 16**

- (1) SDG 16 정의 및 구성
- (2) SDG 16 국가지표 현황
- (3) SDG 16 세부목표와 지표
- (4)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 16
- (5) 보완되어야 할 SDG 16 지표

- **SDG 17**

- (1) SDG 17 정의 및 구성
- (2) SDG 17 국가지표 현황
- (3) SDG 17 세부목표와 지표
- (4)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 17
- (5) 보완되어야 할 SDG 17 지표



SDG 16 정의 및 구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 12개 세부목표와 23개 지표 (잠정)로 구성

(10개 세부목표와 2개 이행수단 세부목표)

▶ 핵심 주제 : 평화로운 사회, 법의 지배, 민주적 거버넌스



KoFID

SDG 16 국가지표 현황

16번 목표 Tier 비중 (잠정)

■ Tier1 ■ Tier 2 ■ Tier 3

Tier 1: 방법론 및 표준 정립,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

Tier 2: 방법론 및 표준 정립,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Tier 3: 지표에 대한 방법론 및 표준이 없거나 현재 개발단계인 경우

16 평화와 정의, 제도

39.1 %

26.1%

34.8%

출처: SDGs 국가지표 작성계획(안). 통계청 (2016.09)

KoFID

SDG 16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지표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의 육체적인 체벌이나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16.2.2 인구 100,000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중 파악되거나 파악되지 않은 인구 수 (성별, 연령별, 착취형태별)
	16.2.3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8-24세 여성과 남성의 비율
16.3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폭력 피해자 중 피해를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신고한 인구 비율
	16.3.2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신원 제공	16.9.1 출생시 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비율 (연령별)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표>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사례 및 사망아동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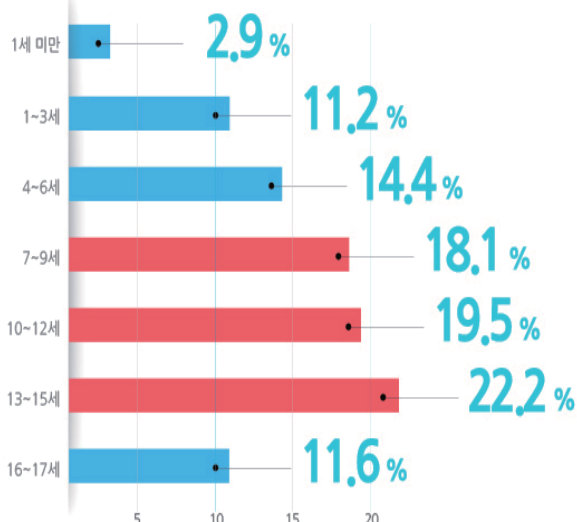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9,688,376	9,578,186	9,331,894	9,099,339	8,885,533
아동학대사례 발생건수	6,058	6,403	6,796	10,027	11,715
사망아동사례 발생건수	13	10	22	17	19

출처: 2015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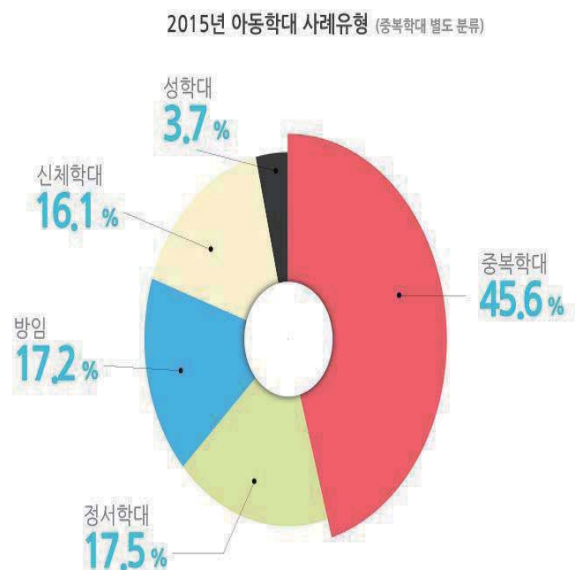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2015 피해아동 연령 (단위 : 사례건수)



2015년 아동학대 사례유형 (중복학대 별도 분류)



출처: 2015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SDG 16 지표의 주요 요소

- 평화로운 사회: 사회 내 각종 폭력 근절
- 법의 지배
 - 1)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공평하게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2)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모두가 **평등한 사법 접근성** 및 **법적 지위의 보장**을 받음.
- 민주적 거버넌스
 - 1) 개인이 정부에 직접 참여, 대표를 자유롭게 선정
 - 2) **공공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SDG 16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지표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의 육체적인 체벌이나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16.2.2 인구 100,000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중 파악되거나 파악되지 않은 인구 수 (성별, 연령별, 착취형태별)
	16.2.3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8-24세 여성과 남성의 비율
16.3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폭력 피해자 중 피해를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신고한 인구 비율
	16.3.2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신원 제공	16.9.1 출생시 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비율 (연령별)



- (1)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법을 보장 ?
(2) 평등한 사법 접근성 보장?



보완되어야 할 SDG 16 지표

<표1> 2015 전체 아동/ 장애 아동 학대 판정 비율 (단위: 명, 건)

구분	전체아동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 수	8,890,000	72,583 (0.8%)
아동학대판정건수	11,715	494 (4.5%)

출처: 2015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표2> 연도별 난민 인정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청자수	1,011	1,143	1,574	2,896	5,711
난민인정	42	60	57	94	105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6.1.26)

*모두에 대한 사법 접근성 보장

: 장애아동, 무국적자 및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인권 보장 필요



SDG 17 정의 및 구성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 ▶ 19개 세부목표와 25개 지표로 구성 (잠정)
- ▶ 핵심 주제 : 파트너십, 투명성, 책무성



SDG 17 국가지표 현황

17번 목표 Tier 비중 (잠정)

■ Tier1 ■ Tier 2 ■ Tier 3

Tier 1: 방법론 및 표준 정립,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

Tier 2: 방법론 및 표준 정립,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Tier 3: 지표에 대한 방법론 및 표준이 없거나 현재 개발단계인 경우

17 파트너십

56.0 %

8.0%

36.0%

출처: SDGs 국가지표 작성계획(안). 통계청 (201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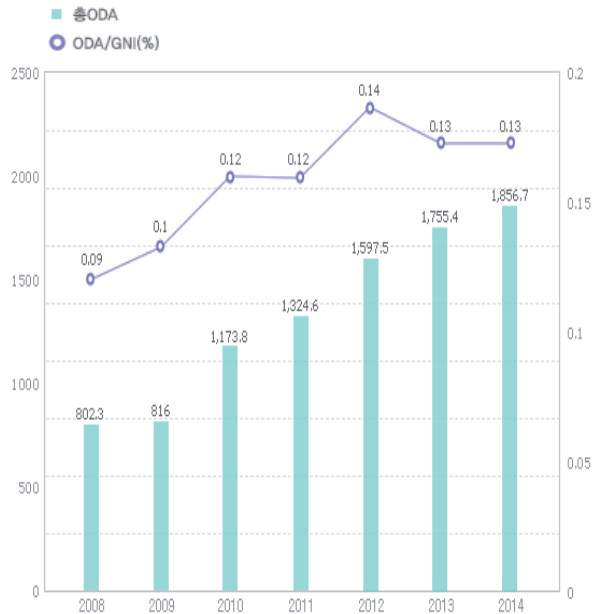
SDG 17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지표
17.2 개발도상국에는 ODA/GNI 0.7%, 그리고 최빈개도국에는 ODA/GNI 0.15-0.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수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이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의 최소 0.20%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	17.2.1 OECD/개발 원조 위원회(DAC)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1) ODA 순액의 비율 2) ODA 총액의 비율 3) LDC(최빈국)에 대한 ODA 비율
17.17 파트너십기관이 가진 재원조달 전략과 경험을 기초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독려 및 촉진	17.17.1 공공-민간 및 시민단체 파트너십을 위해 약속된 US달러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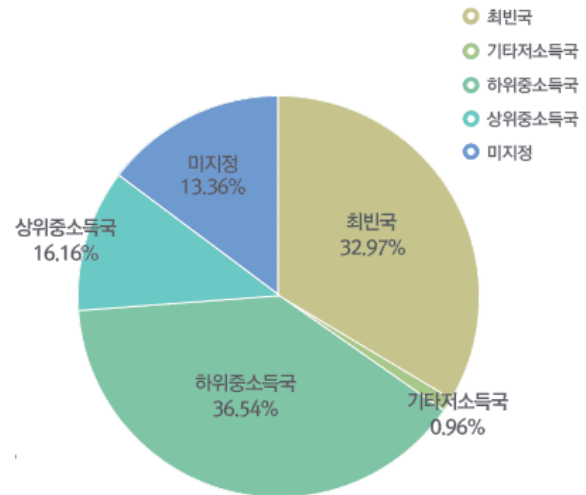


17.2 한국의 ODA 지원현황

<표1> 2008-2014년간 GNI 대비 전체 ODA 규모
(순지출 기준, USD 백만)



<표2> 2008-2014년간 평균 소득그룹별 ODA 지원비율
(순지출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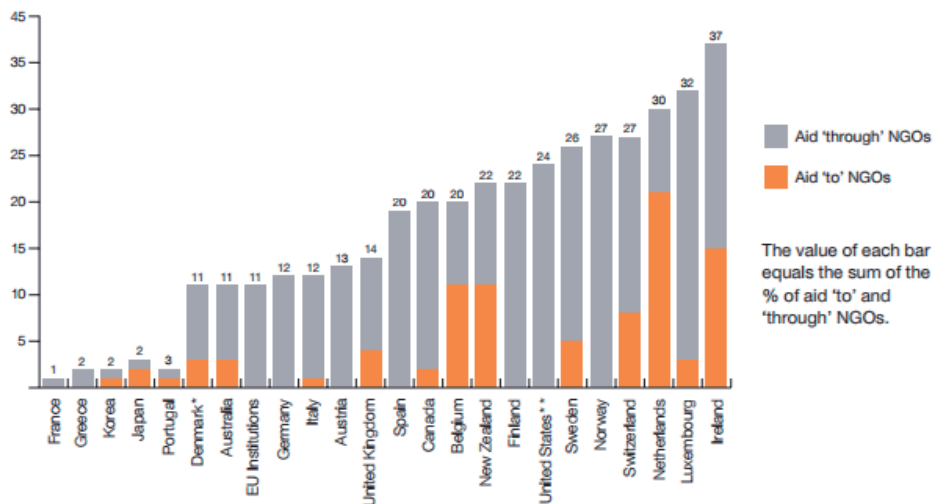


출처: OECD Stats. EDCF 통계 DB (2016.02.04)



17.17 NGO를 통한 양자원조

<표> OECD DAC 회원국들의 양자원조 중 NGO 비중 (2009년, %)



출처: How DAC members work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OECD (2011)



보완되어야 할 SDG 17 지표

ODA 정보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활용

보고 항목	
기관 정보	1. 기관식별 ID
	2. 기관명
	3. 보고기관 유형
사업정보	1. 사업식별 ID
	2. 보고기관 유형
	3. 사업명
	4. 사업설명
	5. 참여기관
	6. 사업현황
	7. 사업날짜
	8. 수원국
	9. 수원지역
	10. 분야

- 한국: 전체 **39개 항목** 중 **13개 필수항목** 우선 공개 함.
- ODA 정보 공개 범위 및 참여 기관 확대 예정
- ODA사업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수원국의 **예측가능성**을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